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원의 지방의원 당선 시 사직 의무화〉

■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280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지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서지영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3. 6.

다. 회부연월일 : 2026. 3.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교수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휴직되도록 함.

그런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¹⁾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그 직을 휴직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임기 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 9. (생략)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②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제43조제1항 및 제5항 각 호2)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 허용, 예외적

1)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2)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지방의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도록 하고, 의장은 해당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이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의 직 등은 원칙적으로 겸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직은 겸직이 허용되나 겸직신고 및 겸직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협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 ⑤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 3)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해당 지방의회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고등교육법」상 ①대학, ②산업대학, ③교육대학, ④전문대학, ⑤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⑥기술대학의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 그 직에서 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2009. 4. 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시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⁴⁾에 취지에 따라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기 위해 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새마을금고·신협⁵⁾의 임직원 등의 겸직금지 규정 등과 함께 도입되었음⁵⁾.

- 참고로,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1949. 8. 15. 시행)부터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8. 4.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6. 7. 1.부터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4)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정 당시부터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 8. 4.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06. 7. 1.부터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함.

5) 안전행정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2163, 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09. 2.

<지방의회의원 겸직의 효과>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보수측면	적절한 보수에 따라 역할 수행 동기 부여	의원의 이익추구 유인 확대
전문성 및 민주주의 측면	겸직을 통한 전문성 제고	봉사자로서의 역할 침해 가능성
지방거버넌스 측면	지방의회 다양성 확대 및 지방의회의 신뢰 강화	이해충돌 및 부패 가능성

※자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에 대한 담론, 김성근·이원교·김민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3.

국회의원은 2013. 8. 13. 「국회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교원의 직이 휴직되도록 규정되었으나, 「국회법」 개정⁶⁾에 따라 현재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겸직이 금지되어 있음⁷⁾.

6)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 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재선거·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당선이 결정된 날의 다음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그 직을 휴직하거나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와 직무 전념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사직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은 예외적으로 겸직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에 국회의원과 동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공무담임권 행사에 따른 개인적 불이익과 겸직 제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범위와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음⁸⁾.

-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지방의원의 지방공사 직원 겸직금지 규정에 관한 결정(2010헌마605)에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의 교원후직 규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다고 한 바 있음.

7) 「지방자치법」

제109조(겸임 등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임할 수 없다.

6. 교원

8)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의무에 관한 법제 진단」, 최봉석, 지방자치법연구 제30호 제11권2호, 2011.6.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규정>

	국회의원	지방의원
겸직금지 내용	모든 직에 대해 원칙적 금지	겸직신고 시 허용
관련조항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또한 지방의회는 다양한 직역과 전문성을 가진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휴직 규정을 통한 대학 교원의 지방의회 진출 확대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전념 필요성 및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 등과 다양한 전문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통한 전문성 제고 및 공무담임권 보장이라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므로

국회의원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